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5. 28 자 2019재나18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5. 28 자 2019재나18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재가합40 판결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1983. 7. 14 선고 83가합488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섭

피고(재심원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0. 5. 14

판결선 고 2020. 5. 28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1983. 7. 14. 선고 83가합488 판결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재가합40 판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재 심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경기 C전836㎡, D전146㎡, D세멘부록조스레트층평가건축택건평17평7홉1작에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김포등기소 1982 . 4. 20. 접수 제 5634 호로 마친 1982.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대한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제 1심에서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 1호, 제 4내지11호에 기초한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 3호에기초한 재심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이 법원에서 추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아래제3항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제3면제12행의"민사소송법제1호, 제4내지11호"를"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4내지 11호"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보이지"부터 제4면 제3행의 "할 수 없다."까지 부분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 11호의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제 5면제 3, 4행의 "그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를" 적법한 재 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할 수 없어"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제 5면제 14, 15행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를"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E는 원고로부터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을 받지않고 단독으로 소송 당사자인 것처럼소송을 진행하여 재심대상 판결을 받았으므로,재심대상 판결에는 대리권의 흠이 있어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나. 판단

을 제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판결에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 3호가 정한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달리 위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사건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황진구판사 이재환판사 전경욱